

#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8.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강설에 의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함

## 2. 주요내용

- 가. 건축물관리자의 재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
-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
- 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함
- 라.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내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함
  -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 평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 마.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
- 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토록 함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예산은 운영의 실효성 등을 감안, 향후 국고보조 등 중앙차원에서 지원체계 마련
- 다. 입법예고 : 2006. 5. 1 ~ 2006. 5. 24(23일간) - 의견없음

##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유형 또는 거주·점유 특성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별표 1 예시도와 같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은 24시간을 지체하여서는 안된다.

②도로여건, 지역특성,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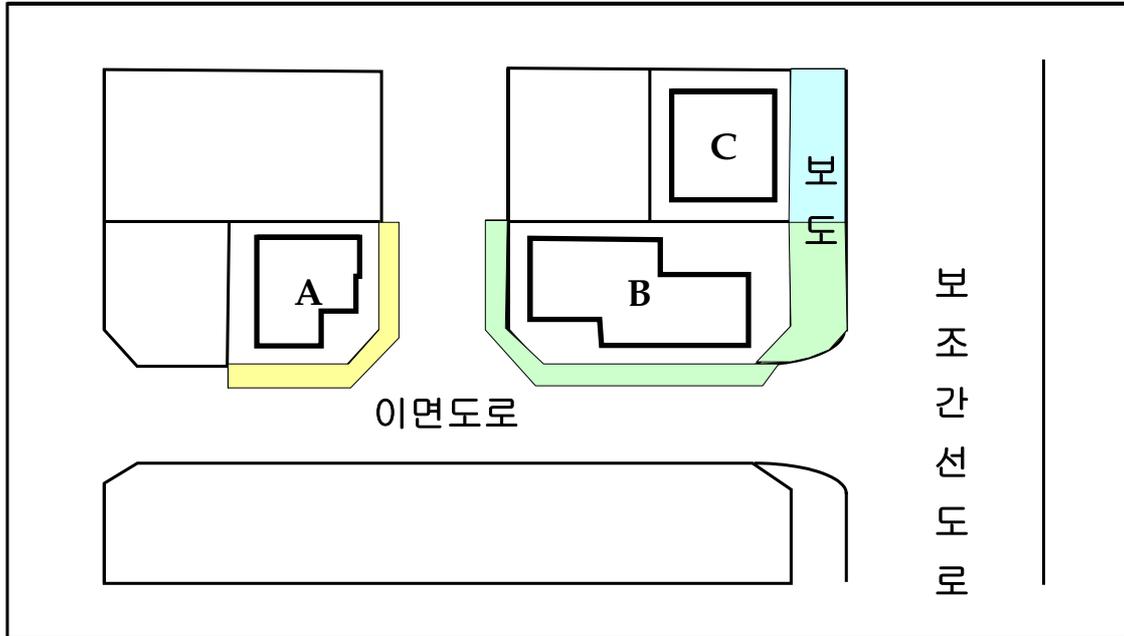
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제5조 관련)



-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①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